질문 3: 시 행정판사에 관한 윤리 규정

뉴욕시 시 헌장 개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라, 시 헌장의 개정은 시 행정재판부의 판사와 심사관의 업무상 처신에 대한 관례나 관례들을 제정하는 규칙을 시장과 행정 재판심사부의 부장판사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한다. 제안된 개정안을 채택할 것인가?

질문 4: 균형된 예산과 기타 시 재정에 관한 요구 사항

뉴욕시 헌장 개정위원회의 제안에 의해, 시 헌장 개정은 시의 1975년도 재정위기에 관련하여 제정됐던 주 법에 따라, 일반적으로 현재 시 재정에 적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회계제도를 시 헌장의 요구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 이 개정안은 시 헌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추가되어 뉴욕주 법이 만기가 된 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이다. 법 개정은:

- 통례로 수용되고 있는 회계원칙 (GAAP)에 의해 시는 매년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며, 이 원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을 적자 없이 마감할 것을 요구한다;
- 시장은 타당성 있는 가정 하에 그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해마다 재 조정된 4개년 시 예산계획서를 편성할 것과 이 예산계획서에 시의 채무 변상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1억불의 일반 비축기금 확보를 요구한다;
- 단기 부채 (산출된 적자를 충당할 자금 조달을 위해 시가 발행한 채권 또는 세금, 수입, 채권 발행으로 예상되는 자금 조달) 에 관해서는 시 헌장의 현 제한 사항에 추가 제한 조건을 요한다.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단기 부채의 기간과 액수를 한정 시킨다; 그리고
- 시 헌장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시 재정에 관한 연례 재무감사에 대해 추가 조건을 요한다.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의 표준을 적용하는데 있으며 감사원이 회계장부를 검토할 권리가 있게 함으로써 시회계연도 마감 후 4개월 안에 감사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다.

제안된 개정안을 채택할 것인가?